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2991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이 행동]

재판경과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2다2991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선고 2011나5660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1.A

2.B

3.C

4.D

5.E

6.F

7.G

피고, 상고인

1.대한민국

2.주식회사 우리은행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선고 2011 나56608 판결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1 목록 순번5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국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68. 3. 13. 법률 제 1993호로 제정 · 시행되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이 1996.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법률,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위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고,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위 특별조치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위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된 것)은 부칙 제2조에서 구 농지개혁법 및 위 특별조치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특별조 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4385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그에 관한 농지분배 당시 원고들의 선대인 H, I의 소유라 할 것인데, 위 각 토지에 대하여는 그 후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을 뿐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1년의 기간까지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분배되었다 하더라도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수분배자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이 완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결국 이 사건 각 토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1년의 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또는 늦어도 1998. 12. 31.이 경과함과 동시에 피고 대한민국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인 H, I의 소유로 환원되었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의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없다.

(2)이 사건 각 토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사실심 법원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의용 신탁법 제63조 본문은 신탁이 종료한 경우에 신탁재산이 그 귀속권리자에 게 이전할

때까지는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신탁이 종료하여도 그 잔여재산을 귀속권리자에게 완전히 이전시킬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므로, 귀속권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탁자가 신탁의 나머지 업무를 마치도록 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신탁은 그 목적에 한정하는 법정신탁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0다25989 판결 참조), 이러한 법정신탁은 어디까지나 신탁관계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법정신탁관계가 존속한다고 하여 원래의 신탁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24878 판결 참조). 또한 귀속권리자를 위하여 신탁 재산을 관리하고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정신탁관계의 존재가 귀속권리자의 수탁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장애가 될 수도 없다.

따라서 귀속권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이 종료하면 바로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행위의 내용에 따라 잔여 신탁재산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귀속권리자의 신탁재산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신탁이 종료한때로부터 이를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① 경기 양주군 J 답 1,579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신탁토지'라고 한다.)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사정된 토지인데, 원고들의 선대인 H 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1940. 10. 31. 조선신탁 주식회사(이하 '조선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신탁자 겸 신탁원본 및 이익의 수익자 H, 수탁자 조선 신탁, 신탁계약기간 1940. 10. 31.부터 1950. 12. 31.까지로 하는 토지 및 기타 정착물 의 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조선신탁에게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 조선신탁은 수차례 상호변경을 거쳐 1999. 1. 6.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흡수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5. 20.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한 사실, ③ 이 사건 분할 전 신탁토지는 1958. 12. 10. J 답 1,426평과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순번5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신탁토지'라고 한다.)으로 분할된 사실, ④ 원고들은 H의 상속인으로서 그 재산을 상속 한 사실, ⑤ 원고들은 2010. 10. 8.에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을 상대로 이 사건 신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H과 조선신탁 사이의 이 사건 신탁계약은 1950. 12. 31. 신탁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고, 기나 그 상속인들의 이 사건 신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950. 12. 31.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하여 신탁자인 H 내지 그 상속인인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신탁관계가 종료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하다가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로서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하였다고 보아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탁재산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 위권을 행사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그러한 보전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39918 판결 참조),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이 사건 신탁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달리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자대위청구를 받아들이고 말았으니, 원심판결 중 이 부분도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3.결론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순번5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대한민국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